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305호(그2)

2015. 8. 6. (목)

함께
서울



목 차

◆ **자치법규**

[입법예고]

제2015-1430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
규칙(안) 입법예고 2

◆ **공 고**

제2015-1429호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열람공고 3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-1430호

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8월 6일
서울특별시장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- 가. 청계천 시설 무상 이용자 및 청계천 프로그램 무상 참가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계천 시설 이용자가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자 함.
- 나. 공원 및 한강시설 등 타 시설 이용자처럼 청계천 시설이용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그 경비를 직접 부담토록 하여 시유재산 활용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본문 개정 없이 별표 개정으로 청계천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대상 추가
 - 현행 시행규칙상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대상(제3조 관련 별표)
 - ： 촬영 및 녹화, 청계광장 사용, 수변무대 등 사용
 -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징수대상 추가(제3조 관련 별표 개정안)
 - ： 촬영 및 녹화, 청계광장 사용, 수변무대 등 사용,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참가비, 자전거대여소

3. 의견제출

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(참조 : 하천관리과,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리과(전화: 2133-3893, FAX: 2133-1044, E-mail : hwangdoh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- ※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-1429호

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열람공고

건설부 고시 제1986-265호(1986. 06. 20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·건설부 고시 제130호(1987. 04. 15)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104호(2004. 04. 20.)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·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270호(2013. 08. 22)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,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원의 보라매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
2015년 8월 6일
서울특별시

- 1. 공 원 명 : 보라매근린공원
- 2. 위 치 :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원 보라매근린공원
- 3. 공원조성계획변경(안)
 - 현장근로자 대기실 및 창고 신축 : 지상 2층, 연면적 472.93㎡
 - 반려견 놀이터 신설 : 시설면적 1,500㎡
 - 남부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신설 : 높이 10.90m, 시설면적 13.98㎡
 - 시설조서 착오정정
 - 시설면적 착오정정 : 기반시설(도로) · 녹지
 - 시설 재분류 : 휴양시설→ 교양시설(남부장애인복지관 · 정신박약복지관)
- 4. 관계도서 : 열람 장소에 비치
- 5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
- 6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시설과
- 7. 안내사항
 - 공원조성계획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8. 문 의 처 :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(시설과 : 02-2181-1157)
- 9. 붙 임 : 공원조성계획변경조서 1부.

<붙임>

공원조성계획변경조서

구 분	변 경 전					변 경 후					비 고 (시설면적 증감)
	부지면적 ㎡	시설면적 ㎡	건 축 물			부지면적 ㎡	시설면적 ㎡	건 축 물			
			동수	바닥면적 ㎡	연면적 ㎡			동수	바닥면적 ㎡	연 면 적 ㎡	
계	415,141.0	163,672.77	18	14,284.34	32,759.59	415,141.00	163,708.48	19	14,681.02	33,232.52	증 35.71㎡ 금회: 증1,865.66㎡ 착오정정: 감 1,829.95㎡
기반시설	59,047.89	59,047.89				57,217.94	57,217.94				감 1,829.95㎡ (착오정정)
조경시설	48,454.00	48,454.00				48,454.00	48,454.00				
휴양시설	5,957.07	5,581.31	4	4,043.49	8,439.60	2,807.55	2,431.79	2	938.97	3,264.35	감 3,149.52㎡ 금회: 감 45㎡ 시설재분류: 감 3,104.52㎡
유희시설	2,402.27	2,402.27				2,402.27	2,402.27				
운동시설	29,197.73	29,197.73				29,197.73	29,197.73				
교양시설	13,209.10	11,377.48	5	7,131.23	16,363.35	16,327.60	14,495.98	7	10,235.75	21,538.60	증 3,118.50㎡ 금회: 증13.98㎡ 시설재분류: 증 3,104.52㎡
편익시설	4,931.53	4,931.53	5	429.06	429.06	4,931.53	4,931.53	5	429.06	429.06	
관리시설	4,761.30	2,680.56	4	2,680.56	7,527.58	5,157.98	3,077.24	5	3,077.24	8,000.51	증1동 396.68㎡ (증 472.73㎡)
녹 지	256,145.11					247,144.40					감 9,000.71㎡ 금회: 감 1,655.66㎡ 착오정정: 감 7,135.05㎡
기 타						1,500	1,500				증 1,500㎡
시 설 율	$(163,672.77 / 415,141) \times 100 = 39.42\%$					$(162,208.48 / 415,141) \times 100 = 39.43\%$					증 0.01% 금회: 증 0.45% 착오정정: 감 0.44%
건 폐 율	$(14,284.34 / 424,106) \times 100 = 3.36\%$					$(14,681.02 / 415,141) \times 100 = 3.53\%$					증 0.17% 금회: 증 0.09% 착오정정: 증 0.08%



함께 서울

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

- 안전한 서울
-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
- 숨쉬는 서울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									
	람								